

# 2. 2023 PEG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피이지시스템

2023. 12. 14

Ver 1.0

## &lt; PEG 연말정산 – 사용자매뉴얼 목차 &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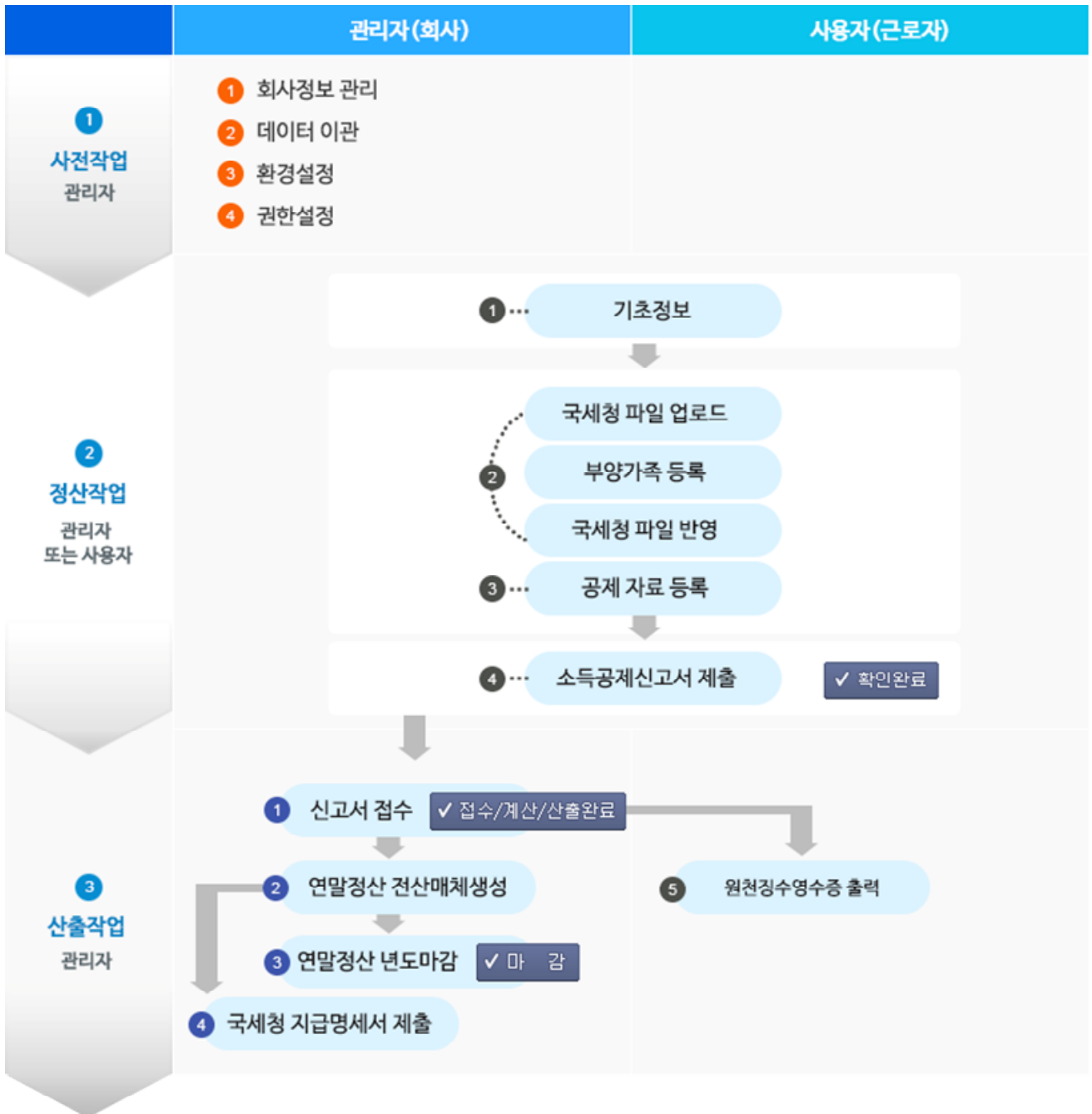
1. 연말정산 작업개요.....	3
1.1 연말정산 작업 Flow.....	3
1.2 마법사 화면 구성 .....	4
1.3 사용자 화면 구성 .....	5
1.4 사용자 화면 목록 .....	6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PDF 다운로드 ).....	7
2. 마법사 화면 .....	9
2.1 급여확인 및 안내 .....	9
2.2 국세청 파일 등록 .....	11
2.3 부양가족 등록 .....	12
2.4 추가공제 확인 .....	15
2.5 국세청 파일 반영 .....	16
2.6 공제정보 수기등록 .....	17
2.7 결과확인.....	17
3. 사용자 화면 .....	18
3.1 기초정보(입력) .....	18
3.2 국세청파일 업로드/부양가족등록/국세청파일반영 (마법사화면과 동일).....	19
3.3 공제정보 등록 .....	19
3.4 공제정보 확인 및 제출.....	25
3.5 소득공제신고서 등 출력(연말정산 제출서류) .....	29
3.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0

### 1. 연말정산 작업개요

#### 1.1 연말정산 작업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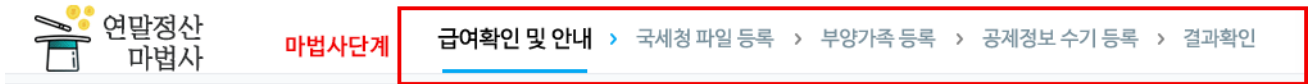
연말정산 관리자와 사용자 각각의 작업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리자의 사전작업을 거쳐서 근로자들이(또는 관리자가 대행) 본인 자료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면 관리자가 취합하여 산출작업을 한 뒤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1.2 마법사 화면 구성

사용자가 단계별로 진행하면 연말정산 입력이 완료되는 마법사 기능입니다.  
최초에 로그인 후 마법사를 먼저 수행한 후 사용자 화면에서 후속작업을 진행합니다.



----- 단계의 이동 -----

< 이전
1.2 급여확인
사용자정보
고길동(A0001)
?
다음 >

구분	총급여	공적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납부 소득세	기납부 지방소득세	
주(현)근무지	42,000,000	1,200,000	900,000	300,000	2,200,000	220,000	상세
중(전)근무지합계	3,500,000	120,000	90,000	30,000	1,300,000	13,000	상세
합계	45,500,000	1,320,000	990,000	330,000	3,500,000	233,000	

### [ 마법사 단계 ]

급여확인 및 안내	등록된 현(주)근무지의 급여정보를 확인하고 종전근무지(현 근무지 외) 소득정보가 있으면 등록한다.
국세청 파일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내려 받은 PDF 파일을 등록한다.
부양가족 등록	전년도 정보와 PDF 의 정보를 기반으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한다.
공제정보 수기 등록	국세청 자료 외에 기타 자료의 공제정보를 등록한다.
결과확인	등록된 내용으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한다.

등록된 급여자료로 계산했을 때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등록이 필요 없으므로 간단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단 이월할 기부금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단계의 이동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lt; 이전</span>	이전 단계 화면으로 이동한다.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다음 &gt;</span>	현재 화면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단계 화면으로 이동한다.
직접이동	<p><b>급여확인 및 안내 &gt; 국세청 파일 등록 &gt; 부양가족 등록 &gt; 공제정보수기 등록 &gt; 결과확인</b></p> <p>상단의 메뉴를 직접 클릭하여 원하는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 완료된 화면만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 작업한 화면의 이전단계만 가능하다.</p>

### 1.3 사용자 화면 구성

#### 1) 화면설명

마법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마법사화면보다 상세하게 확인/수정 할 수 있습니다.


[주메뉴의 '입력' 이 선택된 화면]


- ① 정산년도 : 해당 귀속년도인 2023 년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② 사용자 정보 : 로그인한 본인의 사번과 성명입니다.
- ③ 주 메뉴 : 주메뉴를 선택하면 주메뉴의 작업메뉴 작업영역이 우측에 나타납니다.

구분	상태표시	설명
입력	입력진행중	사용자가 확인완료하기 전 상태
	입력완료	사용자가 확인완료함. 입력화면 입력불가
확인	표시없음	사용자의 확인 완료 전
	확인완료	사용자가 확인완료함. 입력메뉴는 입력완료로 변경되며 입력화면 입력불가 관리자가 접수하기 전에는 확인완료를 취소하여 다시 입력가능
	접수	관리자가 관리자메뉴에서 접수하여 사용자의 확인완료취소 불가
공제 신고서	확인 후 출력가능	사용자가 확인완료하기 전으로 조회 불가
	출력가능	사용자가 확인완료 했고 관리자가 접수하기 전으로 출력가능
	조회만 가능	관리자가 관리자메뉴에서 접수하여 출력은 불가. 조회는 가능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가능기간아님	관리자가 설정한 출력가능기간이 아니라 조회/출력 불가
	정산완료 후 출력가능	관리자의 정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조회/출력 불가
	출력가능	사용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출력 가능

- ④ 메뉴숨김 : 클릭하면 메뉴를 숨길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은 경우 사용합니다.
- ⑤ 관리자공지 : 관리자가 공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작업메뉴 : 주 메뉴의 보조메뉴로 실제 작업할 화면을 선택합니다.
- ⑦ 작업영역 : 작업메뉴에서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으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 ⑧ 도움말 : 각 화면별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과 같은 내용입니다.
- ⑨ 연말정산 마법사 : 마법사 화면이 종료된 후에도 마법사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장된 자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⑩ 매뉴얼다운로드 : 사용자매뉴얼을 PDF 파일로 본인 PC에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작업과정 :

입력화면에서 입력을 마치고 난 후 확인화면에서 계산내역을 확인하고 나면 확인완료(  )를 클릭하고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확인완료 취소(  )를 한 후에 등록정보를 수정한 후에 다시 제출합니다.

관리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처리를 한 후에는 확인완료 취소가 되지 않고 공제신고서도 조회만 가능합니다. 관리자에 의해서 정산작업이 완료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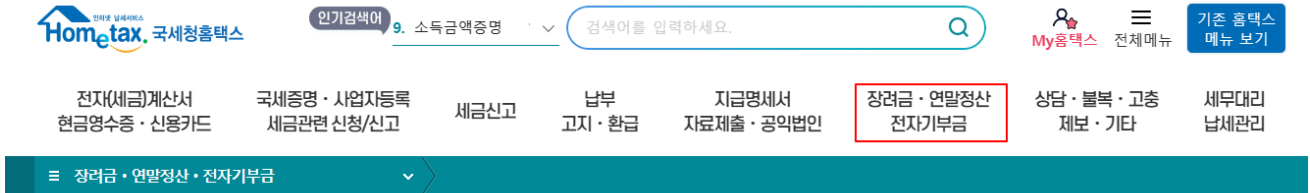
1.4 사용자 화면 목록

No.	메뉴명	탭명	프로그램 설명
1	입력	기초정보	기초정보(세대주여부, 지역건강보험/국민연금 등록), 소득정보(현 근무처 및 종전근무지 급여 정보 확인 등록)
2		국세청파일업로드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공제자료(PDF)를 업로드
3		부양가족등록	부양가족 등록 및 정보수정
4		국세청파일반영	업로드한 자료를 부양가족에 맞게 공제자료로 선택, 반영
5		보험료	보험료 등록 수정
6		의료비	의료비 등록 수정
7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록 수정
8		기부금	기부금, 이월기부금 등록 수정
9		주택자금	주택자금 설문 및 등록 수정
10		연금/기타	기타 공제 등록 수정
11	확인/제출	계산내역확인	계산내역 확인 후 제출
12		공제내역확인	전체 공제 내역 조회 후 제출
13		제출서류첨부	첨부서류 확인 및 업로드(서류 온라인제출 선택시)
14	공제신고서		소득공제신고서, 각종소득공제 명세서
15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관리자의 산출완료 이후 조회 및 출력이 가능

### 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 PDF 다운로드 )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자료인 pdf 파일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3 년 간소화서비스 정식 오픈 전 작성된 것으로 일부 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2) 홈택스에 접속하여 메인메뉴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로 스크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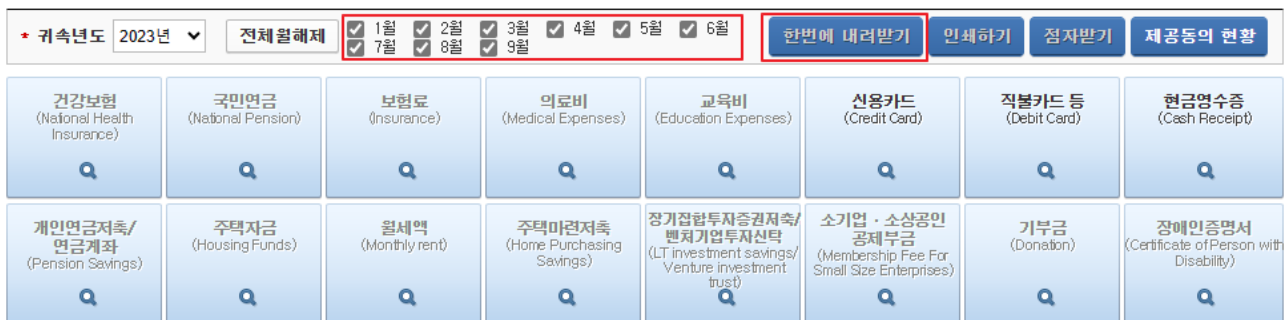


### 근로(자녀)장려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전자기부금영수증

- 3) 부양가족 정보가 필요하면 제시된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 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 5) **귀속년도와 근무월**을 체크 및 확인합니다. 각 공제항목의 돋보기아이콘을 클릭하여 **공제금액**을 불러옵니다.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소득·세액 공제 자료' PDF 파일**을 모두 내려받습니다. 금액조회가 된 항목만 다운로드 됩니다.



6) 2023 년도 **중도입사자**인 경우 근무월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아야 합니다...

**근무일이 있는 월**을 체크 → 금액 활성화 → 한 번에 내려받기 합니다.

\* 귀속년도 2023년 전체월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한번에 내려받기** 인쇄하기 점자받기 제공동의 현황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등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월세액 (Monthly rent)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LT investment savings/ Venture investment trust)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장애인증명서 (Certificate of Person with Disability)

7) 항목별로 따로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공제항목별 **상세(월별)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상세(월별)파일** : 금액이 있는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PDF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월별)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를 선택합니다. 중도입사자인 경우 전체월을 선택하여 상세파일로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① 'PDF 다운로드' 선택

직불카드 기본내역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인별 선택	사용자	상호	사업자번호	종류	공제대상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태권	비씨카드 (주)	212-21-1-1	일반	1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태권	한국카카오은행	212-21-2-1	일반	5,000

인별합계 : 15,000 원

선택 : 2 건      선택합계 15,000 원

②상세(월별)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 선택

	기본(지출처별)내역 전자 문서 내려받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소속회사)에서 기본내역만 내려받기 하여 제출.
	<b>상세(월별)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b>	중도입사(회사)자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 내려받기 하여 제출



## 2. 마법사 화면

연말정산 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화면으로 공제사항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마법사만으로 연말정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를 완료하고 나면 사용자 화면으로 이동하며, 이후 필요시 다시 마법사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화면에서는 마법사에서 작업했던 모든 내용을 같은 화면으로 조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사용자가 쉽게 입력하게 하기 위해 단계별 이동방식과 단순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 2.1 급여확인 및 안내

근로자 본인의 주소, 세대주여부, 지역건강보험, 지역국민연금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근무지의 2022 년 급여정보를 확인하고 종전근무지의 급여정보(2022 년도의 현근무지 외의 근로소득)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기초정보 확인 ]

본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초정보(국세청 신고정보)와 세대주,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최초 작업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 종전근무지 확인 ]

귀속년도내에 현근무지 급여 외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전)근무지 등록 및 확인 ]

종(전)근무지가 있다고 선택한 경우 신규입력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면 '추가'를 선택하여 팝업에서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합니다.

필수입력항목(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 과세급여 중 하나이상, 보험납입정보 중 하나이상)을 입력한 후에 저장합니다. 비과세와 감면내용이 있는 경우는 펼치기/접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급여정보**

• 종(전)근무지 정보 저장 닫기

법인명	<input type="text" value="드림랜드"/>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113-81-98060"/>	종교관련증사자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종전근무지 영문명	<input type="text"/>				

• 근무기간정보

근무기간	<input type="text" value="2023/01/01"/> ~ <input type="text" value="2023/02/25"/>	감면기간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	---

• 과세급여

급여총액	<input type="text" value="5,000,000"/>	상여총액	<input type="text" value="2,000,000"/>	인정상여	<input type="text" value="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input type="text" value="0"/>
우리사주 조합인출금	<input type="text" value="0"/>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	<input type="text" value="0"/>	직무발명보상금	<input type="text" value="0"/>		

• 납부세액정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 ?

결정소득세	<input type="text" value="450,000"/>	결정지방소득세	<input type="text" value="45,000"/>	기납부농특세	<input type="text" value="0"/>
-------	--------------------------------------	---------	-------------------------------------	--------	--------------------------------

• 보험납입정보

국민연금	<input type="text" value="360,000"/>	공무원연금	<input type="text" value="0"/>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input type="text" value="0"/>	군인연금	<input type="text" value="0"/>
건강보험	<input type="text" value="280,000"/>	고용보험	<input type="text" value="70,000"/>	별정우체국연금	<input type="text" value="0"/>		

• 비과세급여 ✓ 비과세 합계 : **400,000 원** + 펼치기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가지고 종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할 때 종전근무지의 납부세액정보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상의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급여확인 ]

해당년도의 모든 급여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상세버튼을 클릭하여 상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수정은 이전버튼을 클릭하거나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이전	<b>1.2 급여확인</b>	고길동(PEG2301) ? 다음 >					
구분	총급여	공적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납부 소득세	기납부 지방소득세	
주(현)근무지	49,500,000	2,000,000	2,100,000	280,000	3,580,000	358,000	<a href="#">상세</a>
종(전)근무지합계	7,000,000	360,000	280,000	70,000	450,000	45,000	<a href="#">상세</a>
합계	56,500,000	2,360,000	2,380,000	350,000	4,030,000	403,000	

## 2.2 국세청 파일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내려 받은 PDF 파일을 등록합니다.

< 이전
2. 국세청(PDF)파일 등록
고길동(PDFUPW3) ? 다음 >

근무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국세청 파일 상세설명** ※ 미근로 제외 월이 없습니다.  
국세청 PDF파일의 전체월을 체크하여 자료를 받아 업로드해주세요.

국세청파일(PDF) 업로드가 안될 때 클릭!!
국세청파일(PDF) 선택

순번	파일명	종류	업로드 일시	
1	고길동(750101)-2022년도자료.pdf	전체-기본내역	2022.12.20 13:17:10	상세 삭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근무월에 맞춰서 전체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안내 참조)

전체파일 다운로드 후 필요에 따라 상세파일을 내려 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b>전체파일</b>	귀속년도에 만근(중전근무 포함)을 한 근로자는 전체월이 선택된 상태로 내려받은 파일을 등록하고 만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중도입사자, 퇴직자)는 화면에 보이는 근무월과 동일하게 월을 선택한 후에 내려 받은 후에 업로드 한다.
<b>상세파일</b>	전체파일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만 적용한다 부양가족의 공제정보를 별도로 받아 등록이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근로자의 전체파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이 본인으로 되어 있는 PDF도 업로드할 수 있다. 만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월별 선택을 하여 전체파일을 내려받거나 공제항목별로 상세파일을 받아서 올려도 된다.

국세청파일(PDF) 선택 버튼을 클릭한 후 팝업창에서 해당파일을 선택하면 바로 등록됩니다.

등록 후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상세 내역을 볼 수 있고 상세내역의 금액을 클릭하면 PDF의 내용이 보입니다.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파일 상세보기

• 국세청(PDF)파일 상세

성명	보험료	의료비	실손보험료	교육비 (유초중고 대학 기타)	교육비 (직업훈련비)	
고길동	3,204,690	5,887,400	114,090	9,700,000	1,941,450	^
고부친		3,370,000				
홍장인		1,621,690				
장장모		1,407,600				
홍부인	1,722,730	4,408,730	32,370			
고영수		220,800	106,900	10,261,600		
고철수		729,300		208,780		
고둘리	489,872	263,800	1,077,048	3,647,360		v

닫기

※ PDF파일에서 추출된 내역입니다. 공제금액은 본인이 신청한 기본공제(부양가족의 소득요건, 나이요건, 타인의 기본공제신청요건)에 따라 변동됩니다.

### 2.3 부양가족 등록

공제받을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고 공제 요건을 선택합니다.

← 이전
**3.1 부양가족 등록**
고길동(PEG2301) ? 다음 >

전년도 정보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국세청파일(PDF)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 추가	✓ 저장	○ 조회		
* 이름	* 내외국인 ?	* 주민번호 ?	* 관계 ?	장애인 ?	기본공제		경로자 ?	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 ?	특례신청 ?	삭제
					기본공제 ?	요건 ?					
고길동	내국인	750101-1234567	본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고부친	내국인	530101-1234567	본인(조)부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삭제
배부친	내국인	520101-1234560	배우자(조)부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삭제
배우자	내국인	760101-2345677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input type="checkbox"/> 삭제
고자녀	내국인	150101-4123458	자녀/입양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삭제
고민수	내국인	230101-4123456	자녀/입양자 <input type="checkbox"/>	1.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input type="checkbox"/> 출산(첫째)		<input type="checkbox"/> 삭제
고손자	내국인	160101-3456780	자녀/입양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나이   소득   부양					<input type="checkbox"/> 삭제

**이름, 내외국인, 주민번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양가족은 삭제 후 다시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공제 :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생계요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2003. 01. 01 이후 출생), 만 60세 이상 (1963. 12. 31. 이전 출생). **(부양요건)**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음. 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고, 장애인인 경우 나이기준 없음.
- 경로우대공제 : 만 70세 이상 ( 1953. 12. 31. 이전 출생 )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중복적용 배제 : 한부모공제 적용
- 출산/입양 입력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순서

#### [부양가족 등록하기]

현재의 부양가족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전년도의 부양가족 정보 또는 국세청파일 정보에 있는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파일에는 장애인정보가 있어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 제외 )

▼ 전년도 정보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전년도 부양가족 목록			
<input type="checkbox"/> 김다형	010120-████████	4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input checked="" type="radio"/> 내국인 <input type="radio"/>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김은형	070624-████████	4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input checked="" type="radio"/> 내국인 <input type="radio"/> 외국인

반영 취소

▼ 국세청파일(PDF)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

국세청파일(PDF) 부양가족 목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영수	000101-3234567	<input checked="" type="radio"/> 내국인 <input type="radio"/> 외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장모	620101-2234567	<input checked="" type="radio"/> 내국인 <input type="radio"/> 외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홍장인	600101-1234567	<input checked="" type="radio"/> 내국인 <input type="radio"/> 외국인	장애인공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 취소

부양가족 정보를 가져와서 저장할 때는 **기본공제 여부를 반드시 다시 체크**해줘야 합니다.

PDF 에서 불러오기를 할 때에는 관계는 가져올 수 없으므로 **관계표시**도 해줘야 합니다.

+ 추가	부양가족을 추가.
✓ 저장	추가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저장
○ 조회	저장하지 않은 작업 취소가능. (확인창 뜸)


데이터를 수정하는 동안은 저장이나 조회(저장하지 않은 작업취소)후에야 다른 작업들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중 >>

저장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장**이나 **조회**를 눌러야 다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관리 ]

부양가족 목록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름, 내외국인, 주민번호	수정할 수 없고 잘못 기입하면 삭제한 뒤 다시 입력한다.																
<p>관계</p>	<div data-bbox="320 327 847 936"> <p>가족관계 선택</p> <p>고민수의 관계 선택</p> <table border="1"> <tr> <td>1. 본인 직계존속</td> <td><input type="radio"/> 본인 부모 <input type="radio"/> 본인 조부모</td> </tr> <tr> <td>2. 배우자 직계존속</td> <td><input type="radio"/> 배우자 부모 <input type="radio"/> 배우자 조부모</td> </tr> <tr> <td>3. 배우자</td> <td><input type="radio"/> 배우자</td> </tr> <tr> <td>4. 직계비속</td> <td><input type="radio"/> 자녀 및 손자녀 · 입양자</td> </tr> <tr> <td>5. 직계비속(코드4 제외)</td> <td><input type="radio"/> 직계비속(코드4 제외)</td> </tr> <tr> <td>6. 형제자매</td> <td><input type="radio"/>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배우자 형제자매</td> </tr> <tr> <td>7. 수급자(1-6제외)</td> <td><input type="radio"/> 기타(수급자)</td> </tr> <tr> <td>8. 위탁아동</td> <td><input type="radio"/> 위탁아동</td> </tr> </table> </div> <p>관계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관계에 따라 기본공제 요건의 '예' 항목이 비활성화 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공제의 '아니요'를 클릭하여 기본공제 요건이 아닌 사유를 선택한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올해부터는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도 직계비속 코드 4로 선택한다.(자녀세액공제 가능)</p>	1. 본인 직계존속	<input type="radio"/> 본인 부모 <input type="radio"/> 본인 조부모	2. 배우자 직계존속	<input type="radio"/> 배우자 부모 <input type="radio"/> 배우자 조부모	3. 배우자	<input type="radio"/> 배우자	4. 직계비속	<input type="radio"/> 자녀 및 손자녀 · 입양자	5. 직계비속(코드4 제외)	<input type="radio"/> 직계비속(코드4 제외)	6.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배우자 형제자매	7. 수급자(1-6제외)	<input type="radio"/> 기타(수급자)	8. 위탁아동	<input type="radio"/> 위탁아동
1. 본인 직계존속	<input type="radio"/> 본인 부모 <input type="radio"/> 본인 조부모																
2. 배우자 직계존속	<input type="radio"/> 배우자 부모 <input type="radio"/> 배우자 조부모																
3. 배우자	<input type="radio"/> 배우자																
4. 직계비속	<input type="radio"/> 자녀 및 손자녀 · 입양자																
5. 직계비속(코드4 제외)	<input type="radio"/> 직계비속(코드4 제외)																
6.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배우자 형제자매																
7. 수급자(1-6제외)	<input type="radio"/> 기타(수급자)																
8. 위탁아동	<input type="radio"/> 위탁아동																
<p>장애인</p>	<div data-bbox="320 936 847 1408"> <p>고영수의 장애인 선택</p> <p><input type="radio"/> 해당없음</p> <p><input type="radio"/>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p> <p><input type="radio"/> 2. 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p> <p><input checked="" type="radio"/> 3. 중증환자(그 밖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p> <p>기간입력</p> <p><input type="radio"/> 영구 <input checked="" type="radio"/> 비영구</p> <p>기간 2021/01 ~ 2025/12</p> <p>확인 취소</p> </div> <p>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선택한다. 기한이 있는 장애인인 중증환자의 경우 기한을 입력한다.</p>																
<p>기본공제</p>	<div data-bbox="320 1408 847 1897"> <p>▼기본공제 '예' 선택시</p> <p>기본공제를 선택하기 위한 기본 요건의 확인</p> <p>기본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 : 당해년도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li> <li>부양 : 본인의 부양가족으로만 신청한 경우만 가능합니다.</li> </ol> <p>※ 기본공제와 항목공제(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교육비)를 분리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p> <p>안내: 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 기본공제를 신청합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 확인</p> <p>확인 취소</p> </div> <p>기본공제 '예' 선택시 기본요건에 대하여 확인하는 창이 나온다.(처음 등록시 한번).</p>																

▼기본공제 '아니요' 선택시 또는 요건의  아이콘을 클릭

기본공제 - NO :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아니요'이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고부친의 기본공제가 아닌 사유를 선택

**기본공제 요건**

<b>나이</b>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b>소득</b>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요	연간 100만원 이하 (총급여나 실수령액 아님) ?
<b>본인부양</b>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다른소득자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 않음. ?

**위의 사유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항목**

공제항목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 기부금
신청금액	0	0	0	0	0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취업, 혼인으로 인한 특례신청시 위의 공제가능항목과 상관없이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취소

기본공제가 아닐 때 요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볼 수 있다.

**경로자**

만 70 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자동 체크.

**자녀세액 공제**

8 세 이상 20 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코드 4)은 자동 체크.

**출산/입양**

고민수의 출산/입양 항목 선택

해당없음  출산  입양

- 2023년 출생자가 아니면 입양만 선택이 가능.
- 2023년 출생자는 기본값 출산이며 입양으로 변경이 가능

선택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 이상(70만원)

- 해당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확인


취소

▶출산

2023 년도에 출생한 기본공제대상 자녀이면 자동 팝업됨.

'출산'을 클릭하고 몇째 자녀인지 선택.

▶입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팝업을 띄워 입력

2023 년도에 입양신고를 한 기본공제대상 자녀라면 '입양'을 클릭하고 몇째 자녀인지 선택

**특례신청**

고민수의 특례항목 신청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  해당없음

- 건강보험산정특례를 신청하면 의료비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공제 특례신청

신청  해당없음

사유


혼인  취업  기타

- 본인의 부양가족이었으나 특정사유(혼인, 취업 등)로 부양가족에서 제외 되는 경우 사유 발생 전까지 부양한 비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특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취소

기본공제대상이고 의료비 한도가 없는 부양가족인 경우는 신청되지 않는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팝업을 띄워 입력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 신청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다.

▶특별공제 특례신청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혼인, 취업 등 특례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례를 신청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2.4 추가공제 확인

<span>&lt; 이전</span> <b>3.2 추가공제 확인</b> <span>고길동(PEG2301)</span> <span>?</span> <span>다음 &gt;</span>	
세대주 여부	세대주 <span style="float:right">수정</span>
부녀자 공제	× 대상아님 : 여성만 가능 <span style="float:right">설명보기▼</span>
한부모 공제	× 대상아님 : 배우자있음 <span style="float:right">설명보기▼</span>
부양가족 정보	전년도와 다름 <span style="float:right">설명보기▼</span>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b>세대주</b>	<p>기초정보에서 선택한 세대주여부 정보를 수정. 기초정보 또는 주택공제 기본정보수정에서도 수정가능.</p>	
<b>부녀자 공제</b>	<p>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 맞으면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요건이 맞지 않으면 '대상아님' 으로 표시된다. 공제신청을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공제요건을 간단하게 확인한다. 신청을 하였더라도 부양가족이 수정되어 요건이 안 맞으면 신청이 취소된다. 신청하지 않음을 선택하면 버튼은 '재신청'으로, 신청하면 버튼은 '신청취소'로 바뀐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한부모공제만 신청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부녀자 공제(50만원 소득공제) <span style="float:right">✕</span></p> <p>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 : 배우자 있음  <input type="radio"/> 신청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있는 세대주  <input type="radio"/> 신청하지 않음(공제자격 없음)                 </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 font-weight: bold;">필수</p> <p>안내 : 위 내용은 사실이며 이상이 없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padding: 2px 5px;">확인</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padding: 2px 5px; margin-left: 10px;">취소</span> </p> </div>	<p>여성, 종합소득금액 3 천만원이하 (총급여액 41,470,588 이하)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는 경우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p>
<b>한부모 공제</b>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한부모 공제(100만원 소득공제) <span style="float:right">✕</span></p> <p>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청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있음  <input type="radio"/> 신청하지 않음(공제자격 없음)                 </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 font-weight: bold;">필수</p> <p>안내 : 위 내용은 사실이며 이상이 없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 <span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padding: 2px 5px;">확인</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padding: 2px 5px; margin-left: 10px;">취소</span> </p> </div>	<p>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있음</p>
<b>부양가족 정보</b>	<p>최초에 <b>PEG 연말정산</b>을 사용하는 경우만 선택할 수 있고, 그 외는 전년도 정보와 비교하여 자동으로 처리된다. 부양가족이 전년도와 비교해 추가되지 않고 줄어있는 경우는 '<b>전년도와 같음</b>' 으로 표시된다.</p>	

### 2.5 국세청 파일 반영

등록된 국세청(PDF)파일과 부양가족 정보를 매칭하여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공제 반영합니다.(저장)

체크표시된 항목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기로 입력한 자료는 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PDF 에서 제공한 항목만 보입니다.

← 이전
**3.2 국세청(PDF)파일 반영**
김길동(PEG11) ? 다음 >

전체선택 선택해제 공제반영

이름	관계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비고
김길동(750101)	0 본인	✓	3,896,317	0	19,536,666	63,001,059	160,000	
<b>부양가족 공제항목</b> 김부친(750101)	0 본인	✓	0	146,400	0	0	0	
김부친(420101)	1 소득자직계존속(부모)	✓	0	0	0	3,628,621	170,000	
홍장인(600101)	2 배우자직계존속(부모)		0	0	0	4,911,640	0	나이요건

**의료비, 신용카드** : 이월비인 신용카드는 최저사용금액을 신청합계 의료비 총급여 3% 5,535,400 신용카드 총급여 25% 95,719,726 의료비 공제금액 : 2,430,400 최저사용 총급여 3% 3,105,000 신용카드 공제금액 : 69,844,726

- 본인 공제항목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투자신탁(2019)	벤처투자신탁(2018)
0	0	0	0	0	0	0
- 주택 공제항목
 

▶ 연말현재 기본정보 : 세대주 무주택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구분	금액	신청	설문결과	사유
<b>주택공제</b> 주택마련저축	3,000,000	해당없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47,125,941	신청완료	신청취소 공제가능	설문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442,628	해당없음		주택임차차입금 신청

※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설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고 싶지 않으면 금액의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b>버튼</b>	전체선택 : 공제가능 항목을 모두 선택. 전체해제 : 공제가능 항목의 선택을 모두 해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선택되지 않는다.
<b>부양가족 공제항목</b>	부양가족 요건(기본공제,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공제특례대상 등)에 맞는 공제항목 선택가능
<b>의료비/신용카드 안내</b>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최저사용금액과 공제가능한 금액, 안내
<b>본인 공제항목</b>	본인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제여부를 선택
<b>주택관련 공제항목</b>	주택관련 공제는 자격요건을 검증한 후에 공제가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주택자금 입력 참조) 신청하는 경우 주택관련공제신청 기본정보 (세대주 여부, 주택소유 여부)를 먼저 입력한 후, 자격요건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설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마련 저축 : 총급여 7 천만원이하, 세대주만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자만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1 주택자만 가능(분양권 제외) ▶ 월세 : 총급여 7 천만원이하, 무주택자만 가능



### 2.6 공제정보 수기등록

입력해야 할 수기자료가 있을 때 마법사에서 간단히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든 화면입니다.

< 이전
4. 공제정보 수기(기타)자료 등록

고갈등(PEG2301)
?
다음 >

+ 의료비	+ 실손 의료 보험금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 투자조합출자	연말현재 기본정보 :	세대주	선택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구분	성명	상세구분	신청금액	비고					
의료비	고부진	본인/65세이상자	5,980,000			수정 삭제			
교육비	고민수	초중고 교육비	350,000			수정 삭제			

• 합계

구분	의료비	실손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수기(기타)자료 입력 합계	5,980,000	0	350,000	0	0
PDF(국세청)업로드 합계	0	0	0	0	0

주로 입력하는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에 대하여 제공합니다.

외에 다른 항목이 있는 경우는 마법사 종료 후 사용자 화면에서 별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세청금액은 국세청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고 국세청파일의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별도의 영수증을 가지고 입력하는 경우는 기타금액으로 값을 넣어야 합니다.(대체로 국세청 금액 입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월세액이나 주택마련 저축 등 주택자금을 추가하는 경우는 주택공제기본정보와 설문 입력하고 통과하여야만 공제항목의 입력이 가능합니다.(사용자화면의 주택자금 설명 참조)

마법사에서 등록한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은 이후 사용자화면에서 동일하게 입력, 수정 가능합니다.

### 2.7 결과확인

입력된 급여정보, 공제정보 그리고 부양가족정보로 계산된 결과를 간단히 안내하고 확인이 체크되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자 화면의 입력 또는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이전
5. 결과확인

고갈등(PEG2301)
?

항목	금액
총급여	5,650,000 원
결정세액	1,056,000 원
기납부세액	4,433,000 원
환급세액	- 337,700 원
납부세액	0 원

안내 : 현재 기준 예상되는 결과이며,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

공제항목별로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아니오, 없습니다.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3. 사용자 화면

#### 3.1 기초정보(입력)

기초정보 종전) 1건	국세정파일 업로드 1건	부양가족등록 6건	국세정파일 반영	보험료 19건	의료비 17건	교육비 19건	신용카드 37건	기부금 전체5건, 이월3건	주택자금 5건	연금/기타 6건
----------------	--------------------	--------------	-------------	------------	------------	------------	-------------	-------------------	------------	-------------

근로자 본인의 2023 년 기초정보와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기초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종전근무지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기초정보

세액감면 / 외국납부세액 추가정보
수정

이름	고길동	주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3길 10		
영문명		영문주소		연락처	
세대주여부	세대주	지역건강보험의	0	지역국민연금의	0

• 국세청 신고정보

거주자 구분	거주자	내국인/외국인	내국인	국적코드	한국	외국인단일세율적용	부
--------	-----	---------	-----	------	----	-----------	---

• 소득정보

종(전)근무지 추가

구분	사업자번호	법인명(상호)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보험납입액	기납부세액	
주(현)	113-81-98060	피이지시스템	2023.01.01	2023.12.31	49,500,000	3,600,000	4,380,000	3,938,000	상세
종(전)	113-81-98060	드림랜드	2023.01.01	2023.02.25	7,000,000	400,000	710,000	495,000	수정 삭제

• 주(현)근무지( 피이지시스템 ) 상세정보

주(현)근무지 정보는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근무기간	근무기간	2023.01.01 ~ 2023.12.31	감면기간	.. ~ ..		
✓ 과세급여	급여총액	45,000,000	상여총액	4,500,000		
✓ 비과세급여	출산보육수당	1,200,000	비과세식사대	2,400,000		
✓ 보험납입액	국민연금	2,000,000	건강보험	2,100,000	고용보험	280,000
✓ 기납부세액	기납부 소득세	3,580,000	기납부 지방소득세	358,000		

기초정보	▶ 수정 : 기초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 세액감면/외국납부세액추가정보 : 세액감면과 외국납부세액 관련된 추가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난다.
국세청신고정보	국세청신고에 적용되는 본인정보를 확인한다
소득정보	현근무지의 소득(급여)정보를 확인하고 종전근무지의 급여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상세정보	소득정보에서 선택된 회사의 소득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 3.2 국세청파일 업로드/부양가족등록/국세청파일반영 (마법사화면과 동일)

기초정보 총(전) 0건	국세청파일 업로드 1건	부양가족등록 6건	국세청파일 반영	보험료 17건	의료비 26건	교육비 18건	신용카드 88건	기부금 전체20건, 이월0건	주택자금 20건	연금/기타 9건
기초정보 총(전) 0건	국세청파일 업로드 1건	부양가족등록 6건	국세청파일 반영	보험료 17건	의료비 26건	교육비 18건	신용카드 88건	기부금 전체20건, 이월0건	주택자금 20건	연금/기타 9건
기초정보 총(전) 0건	국세청파일 업로드 1건	부양가족등록 5건	국세청파일 반영	보험료 13건	의료비 11건	교육비 12건	신용카드 44건	기부금 전체8건, 이월0건	주택자금 3건	연금/기타 9건

### 3.3 공제정보 등록

기초정보 총(전) 0건	국세청파일 업로드 1건	부양가족등록 5건	국세청파일 반영	보험료 13건	의료비 11건	교육비 12건	신용카드 44건	기부금 전체8건, 이월0건	주택자금 3건	연금/기타 9건
-----------------	--------------------	--------------	-------------	------------	------------	------------	-------------	-------------------	------------	-------------

#### [ 보험료 ]

보험료 항목을 클릭하면 등록된 보험료 공제항목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PDF	계약자1	피보험자	보험구분	국세청	기타	추가
	고길동(750101)	김길동(750101)	보장성보험	1,143,000		수정 삭제
	고길동(750101)	김길동(750101)	보장성보험	100,000		수정 삭제
	고길동(750101)	홍부인(810101)	보장성보험	350,067		수정 삭제

추가버튼 클릭하여 상세내용 확인 및 추가/수정합니다.

**보험료**

• 보험료 추가 + 추가 ✓ 저장 ✕ 삭제 닫기

▶ 설명보기

삭제	PDF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구분	국세청	기타
<input type="checkbox"/>		고길동(750101)	고길동(750101)	보장성보험	1,143,000	
<input type="checkbox"/>		고길동(750101)	고길동(750101)	보장성보험	100,000	
<input type="checkbox"/>		고길동(750101)	고길동(810101)	보장성보험	350,067	
<input type="checkbox"/>		고길동(750101)	고길동(000101)	보장성보험	242,220	
<input type="checkbox"/>		고길동(750101)	고길동(750101)	보장성보험	99,030	
<input type="checkbox"/>		고길동(750101)	고길동(750101)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962,000	

※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  \* 주민번호성명

※ 아래 4개 항목(피보험자)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한 명이 포함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 보험구분

※ 국세청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등록된 것입니다.

구분  국세청  기타(국세청 외) 국세청금액

사업자번호  상호

[ 의료비 ]

의료비 공제항목의 부양가족별 집계 리스트와 상세화면이 조회되고 추가입력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집계								
실손보험금 안내								
최저사용금액(총급여 3%) : 2,103,000								
저장 의료비 공제정보 ?								
성명	국세청 의료비	기타 의료비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기타 실손의료보험금 입력?	공제제외금액(이관)?	공제제외금액	실손차감금액	공제대상금액?
김 [가명]	5,100		312,800	150,000			310,000	0
김 [가명]	3,574,050							3,574,050
김 [가명]	51,600							51,600
김 [가명]	306,300							306,300
합계	4,071,750	0	312,800	150,000	0	0	310,000	4,066,650

• 의료비								
의료비 추가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추가								
PDF	성명	항목코드	의료증빙코드	사업자번호	상호	국세청금액	기타금액	공제대상금액
PDF	김 [가명]	본인/65세이상자	국세청	[사업자번호]	[상호]	5,100		5,100
PDF	김 [가명]	실손의료보험금	국세청	[사업자번호]	[상호]	312,800		2,800

▶ 국세청 실손의료보험금

국세청자료로 집계된 실손의료보험금의 총계가 표기됩니다. 수정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 기타실손의료보험금 입력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중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부양가족별 집계금액으로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합계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이 큰 경우

당해연도의 의료비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의 항목의 수정을 클릭하여 실손 차감금액을 입력합니다. 의료비합계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이 크면 공제대상금액은 0으로 계산합니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 공제항목의 부양가족별 집계 리스트와 상세화면이 조회되고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						
공제제외 금액		신용카드 집계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 14,125,000	
신용카드 공제정보 ?						
성명	국세청	기타	공제제외금액(이관)	공제제외금액	공제대상금액	
고길동(750101)	8,000,000	24,000,000			32,000,000	
배부친(520101)						
배우자(760101)	100,000	6,000,000			6,100,000	
고자녀(150101)						
합계	8,100,000	30,000,000	0	0	38,100,000	

• 신용카드							
PDF	성명	신용카드 구분	항목코드	국세청 금액	기타금액	공제제외금액	공제대상금액
	고길동(750101)	신용카드	일반		24,000,000		24,000,000
	고길동(750101)	현금영수증	일반	8,000,000			8,000,000

- **공제제외금액** - 관리자가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을 입력(이관)하였을 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b>공제제외 금액</b>		신용카드 집계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 14,125,000		신용카드 공제정보 ?	
<a href="#">수정</a>									
년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도서공연	전통시장사용액	제로페이	대중교통사용액		
2023년01월	500000	0	0	0	0	0	0		
2023년04월	0	0	0	0	0	0	0		

- **신용카드집계** - 공제신청 내용을 구분별로 집계하여 조회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공제제외 금액		<b>신용카드 집계</b>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 14,125,000		신용카드 공제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개인별 집계</b></li> </ul>									
성명	구분	일반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1~3월	4~12월	1~3월	4~12월	1~12월		
고길동	신용카드	24,000,000	0	0	0	0	0		
	현금영수증	8,000,000	0	0	0	0	0		
배우자	신용카드	0	0	0	6,000,000	0	0		
	현금영수증	0	100,000	0	0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체 집계</b></li> </ul>									
구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1~3월	4~12월	1~3월	4~12월	1~12월	
집계금액	24,000,000	8,000,000	0	100,000	0	6,000,000	0	0	
공제제외금액	500,000	0	0	0	0	0	0	0	
공제신청금액	23,500,000	8,000,000	0	100,000	0	6,000,000	0	0	
최소 사용금액 : 나의 총급여 25% ( 14,125,000 원 )									

[ 기부금 ]

등록된 당해년도 기부금과 이월 기부금의 집계 리스트와 상세화면이 조회되고 각각 추가입력이 가능합니다.

• 당해년도기부금

• 기부금 집계 기부금 공제정보 ?

구분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지정	지정	합계
당해년도	1,000,000	5,060,000			300,000	6,360,000
이월기부금						
합계	1,000,000	5,060,000	0	0	300,000	6,360,000

• 기부금 추가

PDF	성명	항목코드	사업자번호	상호	기부내용	국세청 금액	기타 금액	
	고길동(750101)	정치자금기부금	***-**-*****	*****1	금전	1,000,000		수정 삭제

• 이월기부금 – 전년도 자료에서 이월된 자료를 보여줍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Y' 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집계

구분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조합	종교단체지정	지정	합계
당해년도		5,060,000			290,000	5,350,000
이월기부금		1,500,000				1,500,000
합계	0	6,560,000	0	0	290,000	6,850,000

• 기부금 추가

구분	기부년도	항목코드	기부금액	이월된 금액	확인	
	2018	법정기부금	2,000,000	1,500,000	Y	수정 삭제

[ 주택자금 ]

국세청 PDF 반영에서 주택설문을 하고 넘어왔다면 설문결과와 등록된 공제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PDF 에 나오지 않는 항목은 마법사에서 입력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입력합니다.

• 주택 공제항목 연말현재 기본정보 : 세대주 무주택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주택자금 공제정보 ?

구분	건수	금액	신청	설문결과	사유
주택마련저축	3건	3,000,000	해당없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가능
주택임차자입금	5건	49,525,941	신청완료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신청취소</span>	공제가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설문확인</span>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건	442,628	해당없음		주택임차자입금 신청
월세	0건	0	해당없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가능

• 주택마련저축 설문결과 공제가능한 자료만 보입니다.

PDF	성명	가입일자	공제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국세청	기타
-----	----	------	------	------	------	-----	----

① 주택공제 기본정보수정을 눌러 연말현재 세대주여부와 소유한 주택수를 입력해줍니다.

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설문창을 띄워 설문을 작성합니다.

- ③ 설문결과 공제가능으로 나왔다면 PDF 로 등록된 자료가 공제신청 됩니다.  
PDF 로 등록된 자료가 없으면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공제신청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주택공제 기본정보

•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 수정시 주택관련 신청이 초기화됩니다.
취소
확인

연말현재 세대주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세대주 <input type="radio"/> 세대원 <input type="radio"/> 해당없음(재외국민/외국인)
연말현재 주택소유(세대기준)	<input checked="" type="radio"/> 무주택 <input type="radio"/> 1주택 <input type="radio"/> 2주택 이상

• 주택공제 조건 설명

구분	선택값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비고
	총급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본인 총급여 : 45,655,550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본인 총급여 : 45,655,550원)	
세대주	세대주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세대원	불가능	조건적 가능	조건적 가능	조건적 가능	주1
	그 외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주택 소유	무주택	가능	가능	불가능(예외)	가능	주2
	1주택	불가능(예외)	불가능	가능	불가능	주3
	2주택 이상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예외)	불가능	주4

주1 조건적 가능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2 예외 : 분양권인 경우 세대주에 한해 가능  
 주3 예외 : 2009년 이전 가입 청약만 가능  
 주4 예외 : 2주택이상인 경우 2주택 모두 2005년 이전 보유인 경우 현 거주주택에 한해 가능(관리자 확인 후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소유여부는 연말현재 외에 연중과 취득당시의 요건도 맞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세설문에서 체크합니다.

▼ 외국인의 주택자금 공제 신청

주택공제 기본정보

• 주택공제 기본정보 수정
\* 수정시 주택관련 신청이 초기화됩니다.
취소
확인

외국인 주택공제구분	<input type="radio"/>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input checked="" type="radio"/>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 <input type="radio"/> 해당없음
연말현재 주택소유(세대기준)	<input checked="" type="radio"/> 무주택 <input type="radio"/> 1주택 <input type="radio"/> 2주택 이상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세대원에 준하는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하는 주택공제구분을 선택합니다.

▼ 설문(장기주택저당차입금)하기

기초 설문	세대주 / 1주택	
종류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	1주택 선택 가능
	<input type="radio"/> 분양권	무주택, 세대주 선택 가능
	<input type="radio"/> 전환 또는 대환	1주택 선택 가능
	<input type="radio"/> 년도 중 매각	무주택, 1주택 선택 가능
대출실행 년도	2015.05.15 NN주식회사	2015 년도
매입한 년도가 아니고 <b>차입한년도</b> 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Q1.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입니까? (오피스텔은 불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Q2. 주택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입니까? (공동명의 포함)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Q3. 매입당시 기준시가 4억 이하입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Q4. 주택 취득 당시 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이었습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Q5. 소유권이전(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였습니까?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설문결과    공제가능    **공제불가사유**

본 설문은 공제가능검토를 위한 설문입니다. 설문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거짓으로 작성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내 : 있는 사실 그대로 입력하였습니다.  **확인**

닫기

기초설문을 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설문이 생성됩니다. 설문을 통과하여 공제가능이 나오면 확인을 체크합니다.

[ 연금/기타 ]

연금/기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외 나머지 등록된 공제항목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아닌 근로자 본인만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코드에서 추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에 맞는 입력항목이 나타납니다.

연금/기타

**· 연금기타**    + 추가    ✓ 저장    ✕ 삭제    닫기

▶ 설명보기

삭제	PDF	성명	공제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PDF	고길동(750101)	개인연금저축소속공제	신한금융투자 (주)	03001107662345	
<input type="checkbox"/>	PDF	고길동(75010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201609221234	20
<input type="checkbox"/>	PDF	고길동(750101)	투자조합출자 등(간접) : 조합2(10%)	(주) 국민은행	20315504351234	
<input type="checkbox"/>	PDF	고길동(75010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 신한은행	250084112345	20

**· 상세내용**

* 성명	고길동(750101) O	* 항목코드	투자조합출자
* 투자구분		* 투자일자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금융회사		* 계좌번호 (또는 증명서발급번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수기입력은 국세청금액과 기타금액 중 하나만 입력이 가능하며 국세청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구분	<input type="radio"/> 국세청 <input checked="" type="radio"/> 기타(국세청 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학기술인공제(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연금계좌)	
		연금저축(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합계	30,484,905	0
----	------------	---



### 3.4 공제정보 확인 및 제출

신청한 공제내역을 확인하고 계산결과를 확인한 후 확인완료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온라인 제출합니다.

#### [ 계산내역확인 ]

계산된 결과 값을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계산내역확인

공제내역확인

제출서류 첨부

○ 확인완료

확인이 끝나면 [확인완료] 버튼을 눌러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완료 후에는 [확인완료취소]를 하여야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결과 보기

과거신청정보 비교

**• 계산결과 Summary** ※ 해당 금액은 추정금액이므로 최종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길동님의 총급여액은 97,000,000 원이고 기납부세액은 8,426,000 원입니다. 추정액 결정세액은 0 원이고 총 환급 금액은 -8,426,000 원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세금종류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환급세액	환급세액 합
소득세	0	7,660,000	-7,660,000	
지방소득세(소득세 10%)	0	766,000	-766,000	-8,426,000

※ 국세청 모의계산과 비교시, 원단위 절사로 인한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Summary**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합	그밖의 소득공제 합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97,000,000	14,600,000	22,610,000	5,863,621	53,926,379	7,722,330

**• 세액공제계산 내역** -

구분	항목명	신청인원 (건수)	신청금액	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감면)금액	비고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감면 (90%)		12,000,000	0	859,805	
	세액감면계		12,000,000	0	859,805	
세액공제(그 외)	근로소득세액공제		0	0	444,329	
	자녀	1	150,000	0	150,000	
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연금계좌)		4,750,000	4,750,000	570,000	5,500만초과 12%
	연금저축(연금계좌)		4,380,000	395,008	47,401	한도초과(종합 7,000,000)(잔액 수열)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1,676,207	0	0	세액공제 잔액 0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2,965,420	1,000,000	120,000	한도초과
	의료비		13,545,520	10,287,160	1,543,074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padding: 2px; border-radius: 4px; width: 20px; height: 2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padding: 2px; border-radius: 4px; width: 20px; height: 2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padding: 2px; border-radius: 4px; width: 20px; height: 2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007bff; padding: 2px; border-radius: 4px; width: 20px; height: 2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div> </div>
	교육비		24,632,085	24,632,085	3,694,812	
	정치자금기부금		1,000	1,000	909	
	기부금(법정,우리,지정)		1,460,000	1,460,000	292,000	
특별세액공제계	특별세액공제계		0	0	5,650,795	
세액공제계	세액공제계		0	0	6,862,525	
결정세액	결정세액		0	0	0	
산출세액		세액감면 합		세액공제 합		결정세액
7,722,330		859,805		6,862,525		0

급여정보와 공제신청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정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 (-) 버튼을 누르면 계산상세과정을 열거나 접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표준세액공제 항목 옆의 돋보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상세 계산 창이 열립니다.

[ 상세내역확인 - 교육비 ]

교육비							
• 교육비							
대상자	교육비 종류	신청금액 합계	개인별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 금액	비고	
고영수(000101)	대학교교육비	6,821,600	9,000,000	6,821,600	1,023,240		
고영수(000101)	장애인특수교육비	3,440,000	한도없음	3,440,000	516,000	한도는 이전 교육비 포함	
고철수(050101)	초중고교육비	708,780	3,000,000	708,780	106,317		
고길동(750101)	본인교육비	13,661,705	한도없음	13,661,705	2,049,255		
세액공제 합계금액					3,694,812		
• 신청금액 상세							
대상자	교육비 종류	구분	신청금액	항목별한도	신청가능금액	신청금액 합계	비고
고영수(000101)	대학교교육비	일반	6,821,600		6,821,600	6,821,600	
고영수(000101)	장애인특수교육비	일반	3,440,000		3,440,000	3,440,000	
고철수(050101)	초중고교육비	교복	659,000	500,000	500,000	708,780	
고철수(050101)	초중고교육비	일반	55,300		55,300	55,300	

닫기

[ 적용결과보기 ]

적용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한 공제정보 중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결과 상세리스트			
종류	항목	성명	내용
제외	보장성보험	고길동	소득100만원 초과자
제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고길동	부양가족에 장애인이 없음
제외	의료비	홍부인	신후조리원비용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가능
제외	교육비	고길동	소득100만원 초과자
제외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고길동	해당없음12(주택자는 공제 불가)
제외	월세액	고길동	해당없음25(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가능)
제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고길동	해당없음14(본인이 신청하지 않음)
제외	기부금	홍부인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조항기부금은 본인만 공제가능)

제외 : 신청한 공제가 계산에서 제외된 경우

확인 : 데이터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

안내 : 계산내역 중 특이사항

오류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오류사항

[ 공제내역확인 ]

총 급여정보와 신청된 공제정보의 집계내역을 확인합니다.

계산내역확인
공제내역확인
제출서류 첨부
확인완료

확인이 끝나면 [확인완료] 버튼을 눌러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완료 후에는 [확인완료취소]를 하여야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결과 보기
과거신청정보 비교

총급여	97,000,000	근로소득금액	82,400,000	기납부세액	8,426,000
-----	------------	--------	------------	-------	-----------

- 인적공제/연금보험

소득공제	신청건수	신청금액	세액공제	신청건수	신청금액	연금/보험	소득공제금액
기본공제	5	7,500,000	자녀	1	150,000	공적연금	5,730,000
추가공제	2	4,000,000	출산입양	0	0	사회보험	5,380,000

- 공제신청

이름	관계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비고
고길동(750101)	0 본인	✓	1,242,690	5,773,310	13,661,705	24,063,331	51,000	
고부친(420101)	1 소득자직계존속(부모)			3,620,000				소득100만원 초과자장예인
최장인(800101)	2 배우자직계존속(부모)	✓		1,621,690		5,177,040	210,000	장예인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최저합계	의료비	13,292,160	신용카드	56,255,240	• 의료비 공제금액 :	10,382,160
최저사용	총급여 3%	총급여 25%	2,910,000	총급여 25%	24,250,000	• 신용카드 공제금액 :	32,005,240

- 본인공제항목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조합
6,060,000	5,466,680	5,339,527	7,500,000	6,000,000	118,698

- 주택관련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
0	0	6,770,512	0

[ 제출서류첨부 ]

공제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로 설정한 회사인 경우 제출서류 첨부 탭이 보입니다.

본인이 공제 신청한 항목에 필요한 증명서류들이 리스트로 표시됩니다.

각 증빙 서류의 사진이나 문서를 준비하여 파일첨부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합니다.

계산내역확인
공제내역확인
제출서류 첨부
확인완료

확인이 끝나면 [확인완료] 버튼을 눌러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완료 후에는 [확인완료취소]를 하여야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결과 보기
과거신청정보 비교

-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보험납입증명서, 교육비납부증명서 등

공제항목	첨부서류명	발급처	상세구분	비고	업로드
인적공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고길동750101	파일첨부(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정부24,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	고길동750101	파일첨부(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읍 면 동주민센터	고길동750101	파일첨부(0)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고길동750101	파일첨부(0)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 군 구청	207780001234	파일첨부(0)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소	207780001234	파일첨부(0)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닫기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 파일 크기는 5MB 이하여야 합니다.

파일갯수 : 0건

[ 확인완료 버튼]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더 이상 수정할 것이 없으면 '확인완료'를 클릭합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팝업으로 뜹니다. 확인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출전확인사항

**■ 부양가족정보**

부양가족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등록된 부양가족 : 8 명  
 기본공제자 : 6 명 경로우대자 : 1 명  
 장애인 : 0 명  
 출산입양 : (첫째 : 0 명) (둘째 : 0 명) (셋째이상 : 0 명)  
 자녀 수 : 3 명  
 부녀자 여부 : 공제신청가능  
 한부모 여부 : 공제신청가능

**■ 주택관련공제**

주택관련 정보는 [세대주 / 계속근로] 입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 하였습니다.

주택임차자임금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

허위나 과실, 착오로 작성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필수  확인했습니다.

다음
닫기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두번째 팝업창으로 넘어옵니다.

증빙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로 설정된 회사인 경우 본인이 공제 신청한 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이 보여집니다.

'본인' 란에 'O' 표시된 서류는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준비한 서류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출력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합니다.

분납신청은 추징세액이 회사가 설정한 조건값을 초과한 경우만 가능하며 분납신청과 차년도 소득세율 선택은 회사에 따라서 선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여기서 사인창이 나타나 사인하고 저장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 나면 확인완료 버튼은 확인완료취소 버튼으로 바뀝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확인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국세청	본인	비고
주택자금	주민등록표등본	읍 면 동주민센터		O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시 군 구청		O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소		O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차환, 연장시)	금융회사 등		O	
기부금	기부금영세서	본인 작성		O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O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O	

'시스템제공'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서류입니다.

※ 국세청에 O 표시된 항목은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1장만 제출하면 되며 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본인 해당에 O 표시된 항목은 소득공제 신청이 된 항목입니다.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분납신청  신청  미신청 | 차년도 소득세율  80%  100%  120% (금년도 : 100%)

확인
닫기

확인완료 후에는 연말정산 관련 모든 자료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조회만 가능합니다.

관리자가 공제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이라면 확인완료취소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확인완료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완료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공제신고서를 접수한 후라면 확인완료 취소버튼이 사라집니다.

이후 수정을 원할 시 관리자에게 접수취소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본인의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작업은 관리자가 하는 접수/계산/산출완료입니다.

관리자의 산출완료작업이 끝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5 소득공제신고서 등 출력(연말정산 제출서류)**

소득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관련 출력물을 조회,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2023 연말정산**

연말정산 마법사

입력

입력완료

확인

확인완료

공제신고서

출력가능

원천징수영수증

정산완료 후 출력가능

매뉴얼 다운로드

2023년도 국세청PDF안내

사용자 교육 동영상

v. 2023.0.0

기준년도 : 2023년 관리자공지 0/0

사용자 : 고길동(PEG2301)

**확인완료**

고길동님의 연말정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하는 출력물과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해당하는 사업장)

관리자의 접수 전까지는 확인완료취소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관리자의 정산완료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인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신고서 일괄출력 출력안내 출력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지	소득공제신고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신용카드 명세서	연말정산 첨부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 서식(1)) < 개정안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세액 공제신고서(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액·공제)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본 근로소득자에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액·공제)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자에게 출력할 수 없습니다.

소득자 성명	고길동	주민등록번호	750101-*****
근무처 명칭	피이지시스템	사업자등록번호	113-81-98060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한국 (국적 코드: KR)
근무기간	2023/01/01 ~ 2023/12/31	감면기간	// ~ //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역	한국 (거주지역 코드: KR)
인적공제항목 변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동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별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구분	성명	소득공제항목	기부금명세서	경로증명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건강	고용	보장성	일반	미수입산정액 이상	년령	5세이상	합계	일반
내인	주인등록번호	6	1	1	2,380,000	350,000					5,980,000		
0	고길동				2,380,000	350,000							350,000
1	(근로자본인)										5,980,000		
1	고부친												
2	배부친												

확인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면 공제신고서 화면에서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등은 해당 공제가 있을 시 제출하게 됩니다.

표지를 출력하여 종이로 제출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첨부서류’ 탭을 클릭하면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보여지는 화면의 명세서가 출력됩니다.

일괄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체크된 서류가 한꺼번에 출력됩니다.

- 29 -

### 3.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2023 연말정산

기준년도 : 2023년    관리자공지 0/0

사용자 : 고길동(PEG2301)

연말정산 마법사  
  
 입력  
  
 확인  
  
 공제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매뉴얼 다운로드  
 2023년도 국세청PDF안내  
 사용자 교육 동영상  
  
 v. 2023. 0. 0

관리 번호

## [V]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V]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지) / 비거주지
거주지국	한국 / KR
내·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외국인납세유형	여 / (부고)
외국법인소득과연근로자여부	여 / (부고)
중국연중거주여부	여 / (부고)
국적	한국 / KR
세대주여부	(세대주) / 세대원
연말정산구분	(연속구분) / 종도퇴사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피이저시스템	③ 대표자(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110111-3230333
	② 사업자등록번호    113-81-98060		⑤ 중사업장 일련번호    -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 / (부고)		
	③-2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 / (부고)		
소득자	⑥ 성명    고길동	⑦ 주민등록번호    750101-1234567	
	⑥ 주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 3길 10		

구분	주(원)	중(전)	중(전)	⑩ -1 납세조합	합계
I. 근무자별 소득명세					
① 근무처명	피이저시스템	드림랜드			
② 사업자등록번호	113-81-98060	113-81-98060	-		
③ 근무기간	20230101~20231231	20230101~20230228	-	-	
④ 감면기간	-	-	-	-	
⑤ 급여	45,000,000	5,000,000			50,000,000
⑥ 상여	4,500,000	2,000,000			6,500,000
⑦ 인정상여					
⑧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⑧ -2 주식사주조합인출금					
⑧ -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⑧ -4 직무발명보상금					
⑧ 계	49,500,000	7,000,000			56,500,000
II. 비과세 및					
⑨ -지정비과세2	B01				
⑨ -6비과세학자금	G01				
⑨ -6취재수당022	H11				
⑨ -7박지수당	H12				
⑨ -40비과세식사대	P01	2,000,000	400,000		2,400,000
⑨ -29직무발명보상금	R11				

연말정산 관리자의 연말정산 산출 작업이 모두 끝나면 관리자가 환경설정에서 정해놓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기간에 따라 근로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 페이지 하단의 회사 직인은 회사별 설정에 따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문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문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 30 -